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김 달 효[†]

(부산외국어대학교)

An Analysis of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School Safety Accidents

Dal-Hyo KIM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ceived February 14, 2007 / Accepted June 5, 2007)

Abstract

There are many students in school. So school safety accidents are happened by accident. But, if teachers know and understand about school safety accidents exactly, the school safety accidents can be reduc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generally teacher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are students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teacher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are students only in the cases of predictability. Second, teacher must do his/her best about a duty of attention. If teacher do his/her best about a duty of attention, he/she has not the responsibility about the accident. Third, teacher needs to have more concern student who has a controversial figure. And teacher needs to have an evidence that he/she did his/her best for the student ordinary times. Fourth, the criteria of teacher's legal or illegal punishment to students is (1) the motivation and details for punishment, (2) the methods and degree for punishment, (3) a part of body for punishment, (4) the degree of damage for punishment. Fifth, teacher need to learn the program about school safety accidents systematically.

Key words: school safe accidents, school precedents, education precedents

I. 서론

학교와 학급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매우 많은 학생들이 생활한다. 또한 학교와 학급에서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박병량(2003)은 학교 및 학급의

특성으로 다양성, 복잡성, 공개성, 역사성, 동시성, 즉시성, 불예측성 등을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들 중에서 동시성(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즉시성(일이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것), 불예측성(일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학교 안전사고의 원인이자 특성

[†] Corresponding author : Tel.: 051-640-3603, ekfgyrla@hanmail.net

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는 학생들의 발달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발달적 능력과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의 부조화, 환경을 탐색하려는 자연적인 호기심, 그들 자신을 주장하고 규칙에 도전하려는 욕구, 또래로부터 인정과 수용에 대한 욕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증명하려는 욕구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Swell과 Gaines(1993)의 지적은 학교 안전사고가 학생들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시대적 흐름도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하는 추세이고, 교육도 활동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현실은 학생의 발달적 과정에서 도출되는 호기심, 충동적 행동, 과시와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등과 맞물려 학교 안전사고의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2002)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유치·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1997년 9,265건에서 1999년 15,98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18,94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안전사고의 증가는 피해 학생 개인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초점을 교사에게 맞추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또 다른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중심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담임)교사이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교사의 권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내·외적 부담 및 정신적·경제적 부담과 압력은 교사의 교직원족 및 헌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의 사례를 교육활동 유형별로 즉, 체육시간 활동, 쉬는시간 활

동, 교외 교육활동, 방과 후 귀가지도 활동,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 활동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각 사례에 있어 어떤 판례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판례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특성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특히 학교현장의 교사들과 현직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안전사고의 개념

학교 안전사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고’의 개념과 ‘안전사고’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서 ‘사고’는 ‘뜻밖의 사건’을 의미하며,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 혹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보면, 학교 안전사고는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뜻밖에 일어난 사고’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박영석(2002)은 학교 안전사고는 법률적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였고, ‘학교 안전사고’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학교사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 또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이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넓은 의미로 볼 때, 학교사고란 학교의 교육활동영역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전제에서 의식적, 불가항력적, 자연발생적 행위 등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가져와 손해를 끼친 일체의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표시열(2002)은 사고(accident)란 뜻밖에 일어난 탈로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제반 사고를 ‘학교사고’라고 하였고, 학교사고를 첫째, 시간을 기준으로 통학 중의 사고, 수업활동 중의 사고, 휴식시간 중의 사고, 수업이 끝난 후의 사고, 둘째, 장소를 기준으로 실험실 등을 포함한 교실 내의 사고, 운동장 같은 교실 밖의 사고, 학교 울타리 밖의 교외 사고, 셋째, 피해내용에 따라 신체의 피해사고, 명예훼손 또는 재산피해의 사고, 넷째, 사건 주체에 따라 사람에게 의한 사고, 학교 시설의 사고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태완(2003)은 학교 안전사고를 사고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학생사고’로 쓰이기도 하고, 사고를 당한 학생의 보상 구제를 고려할 때 학생의 인권보장을 사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시민의 인권보장 또는 노동재해에 있어서 노동자의 인권보장 등과 동질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의도로 ‘학교재해’로 쓰이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논의를 종합해보면, 학교 안전사고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교사 및 학생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주로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뜻밖의 사고’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의미에 한정해서 학교 안전사고를 사용한다. 한편, 학교 안전사고에 포함될 내용의 범주 설정에서, 조석훈(2002)은 학생 체벌과 관련된 사건과 학교 안전사고를 구분하여 구성한 반면, 표시열(2002)은 같은 범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법 관례 구분에서도 학생 체벌과 관련된 사건과 학교 안전사고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체벌과 관련된 사건과 학교 안전사고는 같은 범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서로 독립된 범주로 간주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 체벌과 관련된 사건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게 되고 또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안전사고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학교 안전사고의 유형

학교 안전사고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먼저, 안인엽(2001)은 첫째, 시간에 의한 분류로서 ① 교육활동 중의 사고(체육시간, 특별활동시간을 포함한 교과수업 중의 사고; 수학여행, 운동회, 견학, 각종 대회를 포함한 학교행사 중의 사고; 급식시간 중의 사고), ② 휴식시간 중의 사고, ③ 방과 후의 사고, ④ 등·하교 중의 사고, ⑤ 방학 중의 사고를 포함시켰고, 둘째, 장소에 의한 분류로서 ① 교실 내(실험실, 음악실, 시청각실, 특별교실, 실습실 등), ② 교실 외(운동장, 옥상, 복도, 수영장 등), ③ 교외에서의 사고를 포함시켰으며, 셋째, 사고형태에 의한 분류로서 ① 학생과 교원 간의 사고, ② 학생 간의 사고, ③ 학생 자초 사고를 포함시켰고, 넷째, 피해내용에 의한 분류로서 ① 심신의 재해, ② 명예훼손, ③ 재산피해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기호(2005)는 첫째, 책임소재에 의한 분류로서 ① 학교의 영조물 관리 소홀에서 오는 사고, ② 교사의 지도하에서 오는 사고를 들었고, 둘째,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정도에 의한 분류로서 ① 정규교육활동 중의 사고(일반교과수업, 실험실수업, 체육활동수업, 각종 대회 및 행사), ② 비정규교육활동 중의 사고(보충수업, 자율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③ 학교의 일과 잔후의 사고, ④ 등·하교 중의 사고를 들었으며, 셋째, 교원의 입장 여부에 의한 분류로서 ① 입장 중의 사고, ② 비입장 중의 사고를 들었다. 그리고 넷째, 원인행위자별 분류로서 ①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 ② 교원에 의한 사고, ③ 다른 학생에 의한 사고, ④ 학교시설·설비에 의한 사고를 들었고, 다섯째, 장소에 의한 분류로서 ① 학교 안에서의 사고, ② 학교 밖에서의 사고를 들었으며, 여섯째, 피해의 내용 또는 정도에 의한 사고로서 ① 사망, 상

<표 1> 학교 안전사고 발생의 현장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체육 활동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시간	휴식 시간	과외 활동	기타	계
2001년	7,137	240	1,024	822	6,761	1,866	1,091	18,841
2002년	7,333	233	1,105	797	7,133	1,889	1,186	19,676
2003년	7,973	221	1,365	931	8,500	2,128	1,495	22,613
계	22,443 (37%)	691 (1%)	3,494 (6%)	2,550 (4%)	22,394 (36%)	5,883 (10%)	3,772 (6%)	61,230 (100%)

<표 2> 학교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교사의 과실	시설의 문제	학생의 부주의	학생 간 다툼	기타	계
2001년	15	55	15,367	7	3,497	18,941
2002년	16	50	14,998	7	4,605	19,676
2003년	10	55	16,711	9	5,828	22,613
계	41 (0.07%)	160 (0.3%)	47,076 (76.9%)	23 (0.03%)	13,930 (22.7%)	61,230 (100%)

해, 정신적 피해 등의 사고, ② 피해의 정도가 중한 사고 혹은 약한 사고를 들었다.

이렇듯, 학교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안전사고의 유형들 중에서 학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며, 또한 일선 학교현장의 교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친숙한 분류는 교육활동 중심의 분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판례를 전개하였다.

3. 학교 안전사고의 주요 연구결과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률 - 전춘옥(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고의 발생률은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사고의 유형은 외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고의 부위는 팔, 다리, 얼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의 시간은 수업 중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히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시

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월별 안전사고 발생 빈도 - 김복주(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안전사고는 6월, 4월, 5월 순으로 빈번히 발생하였고, 김소선과 이은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4월, 5월, 6월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봄에 전반적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더욱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요일 및 시간별 안전사고 발생 빈도 - 김복주(2001)의 연구와 김소선과 이은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안전사고가 월요일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시간대별 사고 발생률에서는 오후 1시-4시에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고 발생의 현장 및 원인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2003)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은 체육활동(37%), 휴식시간(36%), 과외활동(10%) 순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으로는 학생의 부주의(76.9%)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Ⅲ.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판례들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사례에 한정되는 대법원 판례를 교육활동별로 구분하여 시사점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육시간

가. 사례1(대법원 판례 2000.4.11. 99다44205)

사건개요 : 피해자 중학교 2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단체행동 및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켰고, 체육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급의 학생들 전원에게 단체기합을 주었다. 이에 가해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피해자 학생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시간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 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 쪽에서는 체육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판결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시사점 : 이 사례에서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비록 교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지만 교육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의 단체 활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적 의도로 그에 적합한 벌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대의 학생들이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학생들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게 될 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사례2(대법원 판례 1997.2.14. 96다38070)

사건개요 :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1995년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학생은 오전에 실시된 체력검사 종목만으로도 이미 만점을 받아서 오후의 1,000m 오래달리기는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오전에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함께 뛰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학생도 1,000m 오래달리기에 참여하여 달리다가 쓰러졌고, 체육 주임교사가 인공호흡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후송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사망하

었다. 이에, 피해자 가족 쪽에서는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 소홀 책임을 물었다.

판결요지 :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날의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였고, 이미 체력검사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에게까지 사전에 학생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참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시사점 : 일반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 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활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성격의 교육활동에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특히 날씨, 활동의 성격,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아무리 교사의 의도가 교육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학생을 절대로 그 활동의 참여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시간 도중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적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더 여러 종류의 체육활동에 주의를 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날의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체육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며, 체육활동의 성격과 학생들의 행동지침을 설명하고, 잘못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려줌으로써 교사가 주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체육활동 시간에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학생이 아프다거나 피곤하다고 할 때 체육활동에 강제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여 체육활동 회피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교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쉬는 시간

가. 사례3(대법원 판례 1997.6.13. 96다44433)¹⁾

사건개요 : 중학교 1학년 피해자 학생이 휴식시간 중 청소용 밀대를 가지고 놀던 중 밀대에 묻어 있던 물이 가해자 급우의 도시락에 튀었고, 이에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과안 열공성 망막박피상’을 입혔다. 이에 피해자 학생 쪽에서는 담임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었다.

판결요지 :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

1) 이와 유사한 사건(대법원 판례 1997.6.27. 97다15258)으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소수 몇 명의 학생들이 일찍 등교하여 자기들끼리 있던 상황에서, 한 학생이 장난으로 아크릴판을 던졌고 그 아크릴판이 다른 학생의 눈에 맞아 ‘우안천공성 각막열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학생 쪽에서는 비록 수업시간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업시작 전에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연장으로 보았고, 따라서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활동과 관련 있고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지만, 만 11세 ~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해자 학생도 평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관계도 원만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고가 그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판결하였다.

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시사점 :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가 사전에 사건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느냐가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가해자 학생이 평소에 학교 및 학급에서 문제를 빈번히 일으키는 학생이었고, 담임교사는 그 학생에게 상담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 노력이 없었다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 중에서 특히 평상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더욱 관심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교외 교육활동

가. 사례4(대법원 판례 1976.10.12. 76다1685)

사건개요 : 물놀이 교육 중 피해자 학생이 새끼줄로 표시된 안전 수위를 넘어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였다. 지도교사는 미리 수심이 깊은 곳에 새끼줄로 안전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지도교사가 교육장소로서의 장소 선택의 잘못, 감독 및 물놀이 교육시행방법상의 과실이 있음을 물었다.

판결요지 : 지도교사가 수심이 깊은 곳에 새끼줄로 안전표지를 하는 등 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학생의 수영 능력, 학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장소 선택의 적정을 기함은 물

론 수영지도방법 및 학생의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도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책임을 물은 사례.

시사점 :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가 해야 하는 주위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의 본질적 문제가 제기되지만, 중요한 것은 교사가 매 교육활동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위의 의무에는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설명도 해주어야 하며, 세심한 관찰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사례5(대법원 판례 1999.9.17. 99다23895)

사건개요 :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졸업여행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여 감독교사들이 식사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들이 거처하는 방 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발로 차게 되어 오른쪽 눈이 실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 학생 쪽에서는 교사들에게 보호·감독 의무의 책임을 물었다.

판결요지 : 졸업여행은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졸업여행 전반에 걸쳐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떠나기 전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여행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학교장도 졸업여행을 출발하는 당일 학생들의 들뜬 마음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으며, 평소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의 학교생활 및 관계를 고려할 때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교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시사점 : 일선 학교에서는 소풍, 견학, 졸업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장거리 여행도 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외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감독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더 요구되며, 평소에 행동이 과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더욱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관광버스로 이동할 때는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도록 해야 하며, 도보로 이동 시에도 가급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방과 후 귀가 지도

가. 사례6(대법원 판례 1996.8.23. 96다19833)

사건개요 : 5살(만4살 3개월)된 피해자 유치원생은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귀가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왔지만, 출산일을 일주일 앞둔 담임교사가 배에 통증을 느껴 피해자 유치원생이 버스에 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피해자 유치원생은 담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해자 쪽에서는 담임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 소홀 책임을 물었다.

판결요지 : 유치원 담임교사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유치원생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개인의 피치 못할 생리적 사정으로 피해자 학생을 버스에 태워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피해자 유치원생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²⁾은 없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례.

2) 중과실: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시사점 : 이 사례에서는 만약 교원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준다. 즉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구상권³⁾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는 공무원인 유치원 담임교사의 경과실을 인정했으므로, 담임교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를 통해, 아직 신체발달 및 정신발달이 미숙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에 교문 앞까지 담임교사가 책임을 다해 인솔하여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여 담임교사로서의 책임보호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활동

가. 사례7(대법원 판례 1990.2.27. 89다카16178)

사건개요 : 공립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무단의출 및 무성의한 학습태도 때문에 담임교사로부터 체벌을 받던 중 웃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했다는 기분에 피해자 학생의 머리를 막대기로 여러 번 때리고 구둑발로 머리를 여러 번 차서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 학생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3) 구상권: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배상청구를 하였다.

판결요지 :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피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 10여명과 함께 단체로 체벌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웃어버린 데 있다면 피해자 학생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함께 교사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이며, 또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위가 아니라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 부분으로서 그 상처의 종류와 정도가 통상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이 가하여질 경우에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며, 더욱이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결과 피해자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설사 위 사고가 교사로서의 직무의 연장으로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위 체벌 당시에는 피해자 학생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사로서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의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사의 체벌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⁴⁾

4) 이와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례 1990.10.30. 90도1456) 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시사점 :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가 비록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의도에서일지라도 체벌을 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체벌은 교사의 개인감정이 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흥분해서는 안 되며 차분한 심리적 상태에서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해주고 그것을 각성시키는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가한다는 점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체벌의 도구로는 사회적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적 통념을 고려했을 때, 교사는 손이나 발 혹은 밀대자루 같은 것을 사용하여 체벌해서는 안 되고, 교육기관 또는 학교가 정해놓은 체벌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체벌을 가하는 부위에도 주의를 다해야 한다. 학생의 얼굴이나 머리에 체벌해서는 안 되며, 좀 더 안전한 부위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 체벌의 결과가 심각한 상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체벌의 도구와 체벌할 부위를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체벌 후 학생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결과적으로 교사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체벌은 삼가야 한다.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 1991.5.14. 91도513) 교사가 학생을 엎드려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의 본문에서 살펴본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과 분석을 통해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둘째, 교사는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교사가 주의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어떤 장난을 하면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에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스케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동경기를 할 때에도 그 운동경기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학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교에서 평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평소 학생의 행실로 볼 때 교사가 없는 상황

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교사 책임을 묻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학생이 있다면 평소에 상담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자료는 교사가 평소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노력을 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의 그러한 노력은 비단 사고에 대한 소극적인 목적을 넘어서, 학교와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올바른 학생을 육성임을 되새길 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교사는 학생의 보호 및 감독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여러 판례를 검토해보면, 교사는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교육활동의 장소와 시간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사고에 한해서만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상황과 종류에 적합한 지도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업지도안에 그러한 사전지도 내용을 기재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합리적인 사후조치를 침착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처치와 전문 의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고의 내용과 사고 당시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항을 보호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여섯째,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1)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과 경위, (2)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3)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 (4)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일곱째, 체벌과 관련하여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법 제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 체벌 시의 고의나 중과실은 민법상 교사의 불법행위 책임과도 관련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여 사용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체벌 시 주의의 의무 이행 여부는 형법과 민법상 교사의 책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조석훈, 2002, p.207).

여덟째, 교사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에게 대한 연수 프로그램에 학교 안전사고의 내용이 좀 더 체계적이고 주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활동중심의 교육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학교 안전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교사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공헌하는 것이 된다.

아홉째, 학교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학교보건법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연간 40시간 안전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 안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하고 있으며, 미국은 많은 주에서 학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독립교과로 운영하고 있다(이명선, 2003). 따라서 현재와 같이 몇몇 교과에서 일부분만 다루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학교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처럼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형식보다는 웹기반 형식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안전사고 예방 학습의 지식, 태도, 실천, 그리고 학습동기에 있어 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송미경(2003)의 연구에서 밝혀졌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사고발생률이 1,000명당 317명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 Rivara(1992)의 연구에서 밝혀진 만큼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열째,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규정이 없고, 단지 민법과 국가배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학교 안전사고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사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교원들 사이에 회자되어 교직원에 대한 만족감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 법 규정의 마련은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사고 처리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와 정보, 그리고 보상 문제의 해결에 유용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3).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 자료.
- 김소선·이은숙(199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간호학회지. 27(1). 117~126.
- 김태완(2003)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법원 판례 (1976.10.12. 76다1685)
- 대법원 판례 (1999.9.17. 99다23895)
- 대법원 판례 (1997.6.13. 96다44433)
- 대법원 판례 (2000.4.11. 99다44205)
- 대법원 판례 (1997.2.14. 96다38070)
- 대법원 판례 (1996.8.23. 96다19833)
- 대법원 판례 (1990.2.27. 89다카16178)
- 전춘옥(1997). 초등학교 학내사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복주(2001). 농촌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량(2003). 학급경영(개정판). 서울: 학지사.
- 박영석(2002).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미경(2003). 초등학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웹기반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인엽(2001). 전라북도 교원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호(2005).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법원 판례의 경향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선(2003). 선진 각국의 안전교육. 월간 마당 21. 97호.
- 조석훈(2002). 학교와 교육법. 서울: 교육과학사.
-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2002.
- Rivara, F. P.(1992). Injury control: issues and methods for the 1990s. *Pediatry Ann.* 21(7). 411~413.
- Swell, K. H., & Gaines, S. K.(1993).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hood safety education. *Pediatric Nursing.* 19(5). 464~466.